

물품관리규정 발췌

제6조(물품관리자등의 업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관리(보관포함)하고 사용한다.

제61조(손망실 보고) ①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물품관리자가 제6조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3.20)

제62조(손망실 처리) ①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개정 2009.3.20)

②변상방법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현금변상 시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 변상 시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 된 물품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자인 물품운용자(물품을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자(물품운용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을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임물품출납담당자 또는 물품운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9.3.20)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품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